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2.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7.21.)

상정 · 대체토론 · 소위심사보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함)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라 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6)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별표에서는 총 11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총 95개임.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

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개정안이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 내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이하 “신공항개발사업”이라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신공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9조제2항은 신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를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공항시설법」 제7조제9항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시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권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9)에 따라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토지보상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및 「공항시설법」을 종합하면 신공항개발사업은 현행법 체계로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실시계획’의 수립·고시 시점부터 토지의 수용이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신공항개발사업의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절차를 개편하려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2200449호, 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이라 함)안의 제9조의2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시점에 신공항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은 신공항개발사업의 보상절차를 앞당기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시점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신공항개발사업의 공기가 1년 가량 단축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이에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안」 제9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규정과 「토지보상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의2를 고려할 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항개발사업은 노선 변경 가능성이 적어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상구역 변경에 따른 계약취소, 환매 등 분쟁 발생 소지가 비교적 적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등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열거된 사업 중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으며,

현행 「토지보상법」에 공항개발사업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별표 제2호(96)이 신

설되더라도 토지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유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